

군유 행정재산 「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」 무상사용 동의안

의안 번호	28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
제안자 : 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- 군유 행정재산인 「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」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그 사용료를 전액면제(무상사용) 하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5항 제2의 2호에 따라 평창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사업개요

- 위치: 평창군 미탄면 창리 868-1번지 외 5필지(6,079㎡)
- 사업비: 금5,730백만원(기금 3,438, 군비 2,292)
- 사업기간: 2021.2.~2024.12.
- 사업량: 잡곡 생산·유통센터(창고시설) 1개소
- 사업내용(건물 1707.75㎡)
 - 정선시설 1개소(381.6㎡/시간당 2톤), 사무실 1개소(90㎡), 일반저장(창고) 시설 2개소 (292.8㎡), 저온저장고 5개소(501㎡/290톤)
 - 기타(442.35㎡/작업장, 집진실, 콤프레서실, 기계실, 작업 통로, 지게차 등)
- 수탁기관: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
- 위탁기간: 준공일 ~ 2029. 9.(5년)
- 사용목적: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 운영·관리

3. 주요 내용

가. 추진현황

- 한강유역환경청 “친환경 청정사업” 공모 선정: 2021.2.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 건립』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연구용역 2021.4
- 평창군 2021년 제4차 지방재정 투자심사: 2021.11.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 건립』 부지확보: 2022.3.
- 건축기획 용역 계획수립: 2022.6.
-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: 2022.7.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 건립』 건축기획 용역 완료: 2022.7.
- 건축 설계검토 및 인허가: 2023.2. ~ 2023.3.
- 건축 착공 및 준공(1차 연도): 2023.5. ~ 2023.10.
- 정선시설 설치 및 준공: 2023.10. ~ 2023.12.
- 운영 조례 제정: 2024.1.
- 2차 연도 사업추진(건축, 토목, 전기, 소방): 2024.1. ~ 2024.8.
- 저온저장고 계약 및 착공·준공: 2024.4. ~ 2024.8.

나. 시설현황

- 평창군 잡곡 생산·유통센터 부지 현황

군	읍.면	리	번지	면적(m ²)	비고
계				6,079	
평창군	미탄면	창리	868-1	4,125	
			530-4	419	
			531-2	704	
			532-2	330	
			533	179	
			627-9	322	

○ 평창군 잡곡 생산·유통센터 건물 현황(1,707.75㎡)

구분	면적(㎡)	개소별 면적	주요 내용	비고
계	1707.75			
야외작업장(1개소) 정선시설(1개소)	471.6	야외작업장(1개소): 90 정선시설(1개소):381.6	- 콩 선별·도정시설 설치 - 시설운영 및 관리사무실 및 장비·자재 보관시설 설치	
일반저장시설 (2개소)	292.8	1동: 202.8 2동: 90	- 작물 건조 및 보관	
저온저장시설 (5개소)	501	1동:141 2동:120 3동:120 4동:60 5동:60	- 작물 저장에 필요한 저온저장시설	
집진실. 기계실. 콤팩레샤	89.75	집진실:18.9 콤팩레샤실:23.85 기계실: 47	- 장비 운용시설	
사무실(2층) 1개소	90		- 사무용품 등	
기타(통로)	262.6			
물품(기타 재산)		지게차1 수송차량 1	- 잡곡생산·유통에 필요한 지게차 및 수송차 구입	

4. 향후 계획
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』 공유재산 무상사용 심의·의결: 2024.5
- 위탁 신청서 접수(관리수탁자): 2024.5.
- 위탁운영에 대한 계약(협약) 체결: 2024.5.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』 건물 준공: 2024.8.
- 지게차, 수송차량 등 운영 물품 구매: 2024.6. ~ 2024.8.
- 『평창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』 운영: 2024.8.

5. 소요 예산(위탁관리비 지원)

○ 연간 관리 위탁 산정액(예산)

- 소요액: 190,000천원

- 산출기초

• 전기료: 7,000천원 × 12월 = 84,000천원

• 상수도 사용료: 250천원 × 12월 = 3,000천원

• 일반운영비 103,000천원

인건비(기본급, 급식비, 교통비, 4대보험, 퇴직충당금 등):

3,500천원 × 2인 × 12월 = 84,000천원

사무용품 및 기타 운영비 19,000천원

※ 2024년은 시험가동 등 일정에 따라 6개월분 예산 편성(1회 추정)

(전기요금, 상수도사용료, 일반수용비 등)

○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방향

- 2025년 당초예산에는 연간 예산 반영 필요하며 위탁 운영자의 관리 능력 향상 및 자립도 증가 시 인건비 등 위탁관리비 연차적으로 미 편성

6. 검토 사항(필요성)

○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는 잡곡 생산 확대를 통한 농약 및 비료 절감을 꾀하여 수질오염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,

○ 평창군 친환경 잡곡 생산·유통센터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공공사업으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(전액 면제)하고자 함.

7. 참고 사항

○ 위치도(현장사진)

지적도	위치도(위성사진)
현황사진	
상공	측면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

제24조 (사용료의 감면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 - 1.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·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
 - 2. ~ 3. 생략
 - 4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**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**

□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

제17조 (사용료 감면)

- ① ~ ④ 생략
- ⑤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서 "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[개정 2020.12.22., 2022.4.20.]
 - 1.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
 - 2.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
 - 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**
 - 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
 - 4. 제13조 제3항 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 허가

를 하는 경우

□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제5조(심의회의 업무) ① 심의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14.3.21>

1.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사항
2. 삭제 <2008.10.17>
3.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<개정 2022.12.30.>
4. 삭제 <2015.10.08.>
5. 법 제12조 단서에 따른 회계 간 무상 이관
6.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, 취득·처분에 관한 재심의(다만,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)
7. 제22조의2 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민간 위탁 기간 갱신을 위한 타당성 평가
8.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
9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
10.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중기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<신설 2022.12.30.>
11.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